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구조·구급집행계획 수립 업무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

내 용

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·도본부장은 시·도 구조·구급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조·구급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시·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‘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·도의 세부 집행계획’, ‘구조·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,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’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시·도 구조·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‘구조·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,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’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고,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광주광역시 ○○○○본부에서는 2016년 및 2017년 구조·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조·구급대원의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한 세부 집행계획

을 누락하고 수립하였다.

또한 구조·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계획의 경우 대부분 구조대원에 내용으로, 구급대원에 대한 안전관리 방지 계획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흡하게 작성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

[주의] 앞으로 구조·구급집행계획 수립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